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85호
- 나. 제출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2. 12. 21.
- 라. 회부일자 : 2022. 12. 21.

2. 제안이유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제한사항과 해촉 사유에 행위능력 제한자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공신력 높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 위촉 시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나. 위원의 의무적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신설)
 -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위촉 전후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제80조
- 「민법」 제9조, 제12조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본 조례 개정으로 자문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금천구의회 입법법률 자문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자문 받았으나,
- 형 집행 도과 기간의 제한 없이 위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고 ‘위촉 전후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소급입법 금지 및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집행기관의 법률자문이 있어 서로 상충되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자치구별 정책자문위원 해촉사유 현황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자치구	해촉사유(요지)	비고
종로구	없음	
중구	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용산구	없음	
광진구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강북구	없음	
노원구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서대문구	없음	
마포구	1. 위원 등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 등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금천구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관악구	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자치구	해촉사유(요지)	비고
강남구	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송파구	없음	
강동구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